

# 목 차

정 관 .....	1
-----------	---

# 정 관

2007. 07. 03 제정  
2009. 03. 20 개정  
2009. 09. 11 개정  
2010. 03. 12 개정  
2010. 12. 29 개정  
2011. 03. 18 개정  
2012. 03. 23 개정  
2014. 03. 21 개정  
2015. 03. 20 개정  
2019. 03. 29 개정  
2020. 03. 27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JW HOLDING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의약품 도소매업
3. 수출입업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5.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
6. 투자,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7.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 유통업
8. 의료기기 판매업
9. 산업플랜트 설비,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의 판매, 유통, 중개업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소매업
1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i.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ii.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w-holding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며, 법령 등에 의하여 2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 신문 외에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단, 폐간,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위 신문들 중 하나 또는 모두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게재하지 못한 신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40,000,000주로 한다.

### 제 6 조 (壹株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株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 7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할 주식의 수는 5,000,000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에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제 8 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 ① 이 회사는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그 수와 내용은 제7조의 2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 제 8 조의 2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 제 8 조의 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 조정기준일 및 조정방법 등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의 조정이 가능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주식의 존속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④ 전환청구 기간은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8 조의 4 (상환전환주식)

- ① 회사는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라 이를 상환주식인 동시에 전환주식인 상환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8조의 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의 3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제9조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삭제

#### 제 10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11 조 (신주 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국내외의 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 12조 (일반공모증자)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본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공모증자에 한해서는 그 발행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제 13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상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한 자는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별도의 부여에 관한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나.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 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라. 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설립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 제

제 17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로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 2주간 전에 위 공고를 한다.
- ②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오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가.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다.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라.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바. 연구개발, 생산·판매·전략적 제휴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오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다.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라.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바. 연구개발, 생산·판매·전략적 제휴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자동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20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 제 21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소집한다.

### 제 22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3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  
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 제 25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6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  
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  
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7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8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9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2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3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 제 34 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사외이사의 수는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 의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은 회사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 제 35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거나, 3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이사(사외 이사 제외)로 선임되기 위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찬성한 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6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 37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8 조 (대표이사의 선임 등)

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하여 회장 또는 사장에 보하고, 나머지 이사를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에 보할 수 있다.

#### 제 39 조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0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1 조 (감사의 직무) 삭제

#### 제 42 조 (감사의 감사록) 삭제

#### 제 42 조 2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3 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회의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회의의 대표이사가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44 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회의의 의장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회의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5 조 (이사회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6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회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6 조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6 조 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47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임기당 과거 1년간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 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 제 47 조의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8 조 (자문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문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자문역의 선임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 제 6 장 계 산

#### 제 49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의 제1기 사업년도는 그 설립일로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50 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 대상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게재한다.

#### 제 52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가.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나. 기타의 법정적립금

다. 배당금

- 라. 임의적립금
- 마.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바.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53 조 (주식의 소각) 삭 제

제 54 조 (이익배당)

- ① 이익금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5 조 (분기배당)

- ①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 배당금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해야 한다.
- ③ 분기 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가.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 나.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다.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라.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마.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된 임의 준비금
  - 바.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 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6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 57 조 (제규정 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제규정 및 동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8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